

## ●국토교통부공고제2020-880호

「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」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년 7월 1일

국토교통부장관

###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#### 1. 개정이유

공공건축 설계공모 정보의 접근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설계공모 시행 공고와 심사결과를 「건축법」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에 공개하도록 하고, 건축과정에서의 설계자 참여에 관하여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 등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, 공공건축지원센터 지정대상 변경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#### 2. 주요내용

가. 공공건축 설계공모 정보의 접근성 및 투명성 강화(안 제17조제7항)

공공기관은 설계공모 시행 공고 및 심사결과를 「건축법」 제32조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(세움터)에 공개하여야 함

나. 설계자 참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 고시(안 제19조제2항)

설계자 참여(설계의도 구현)에 관하여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음

다. 공공건축지원센터 지정대상 변경(안 제21조제1항제1호)

건축공간연구원 독립 법인화에 따라 공공건축지원센터 지정대상을 ‘국토연구원’에서 ‘건축공간연구원’으로 변경

#### 3. 의견제출

이 개정령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로 2020년 8월 1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(<http://www.molit.go.kr>)→정보마당→법령정보→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이유)

나. 성명(법인·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보내실 곳: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(정부세종청사 6동)

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

(전화: 044-201-3778,3782 팩스: 044-201-5574)

## ●국토교통부공고제2020-883호

「건설기술 진흥법」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,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

주시기 바랍니다.

2020년 7월 1일

국토교통부장관

건설신기술 지정 신청

1. 기술개발자

- 가. 성명 또는 법인명(대표자 성명) : ① (주)더숲디엔씨 (하영관)  
 ② (주)호반건설 (송종민)  
 ③ (주)호반산업 (김진원)

나. 전화번호 : ① 02-719-9381 ② 02-6177-0542 ③ 02-6177-4774

2. 명칭 : 현장타설 말뚝과 콘크리트 기성말뚝을 이용한 흙막이 벽체 시공방법 및 휨 강성을 강화한 흙막이 벽체용 Hi-PHC 말뚝

3. 내용요약

<분야>

토목 / 토질 및 기초 / 흙막이공

<기술의 요지>

지하 터파기용 흙막이 벽체를 형성하기 위해 기존의 CIP공법을 개량하여, 철근망 매립 현장 타설 콘크리트 말뚝(CIP PILE) 대신에 휨 강성을 강화한 Hi-PHC PILE을 시공하여 콘크리트 기성 말뚝과 현장타설 말뚝을 혼합 시공하는 흙막이 벽체 공법

<범위>

H형강을 매립한 현장타설 말뚝인 사이드 PILE과 콘크리트 기성말뚝인 PHC PILE을 혼합한 시공방법과 휨강성을 강화한 재료의 사용

4.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(전화: 031-389-6350)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※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

가.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

나.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

- 1)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·도용한 경우
- 2)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
- 3)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

다. '나'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

●해양수산부공고제2020-997호

「해사안전법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년 7월 1일

해양수산부장관

**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**